

3. 土地收用法施行令中改正令

大統領令 第13,908號 1993. 6. 10

토지수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8조의4제1항 본문 및 동항제2호중
“사업인정고시일”을 각각 “사업인정고
시일 현재”로 한다.

제18조의6중 “1억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
한다.

①(시행일)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
한다.
②(적용례)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
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인정의 고시가
있는 사업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는 분
부터 적용한다.

□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□

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보상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 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, 채권보상의 대상이 적어 재원확보수단으로서의 효과가 미흡하므로 그 기준금액을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